

#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12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3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편의지원센터(하모니콜) 운영을 일과시간에 맞춰 운영하는 것을 연중무휴 운영으로 개선하고,
-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수단 이용대상 정비와 함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 규정된 차량외의 차량 또는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하모니콜 24시간 운영 관련 근거 일부개정 (안 제7조제2항)
- 임산부, 장애인 이용대상에 대한 관련 근거 일부개정 (안 제11조제1항)
  - ※ 장애인 이용대상자에 대한 상위 법령 변경
  - ※ 임산부 교통편의 정책 추진에 따른 이용대상자 명시
-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관련 근거 일부개정 (안 제12조제1항)
  - ※ 현재 요금기준에(기본요금1,200원)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
-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(바우처택시) 운영 근거 신설 (안 제13조의2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붙임4(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추진계획)

예산수반사항 : 붙임5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9. 2. 11. ~ 2019. 3. 3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6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7

< 붙임 1 >

##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,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이용이 적은 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65세 이상” 을 “임산부 또는 65세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” 을 “대중교통요금” 으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13조의2(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자)

-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해당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·운영과 이용요금은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,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교통정책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교통정책과장 이 관 섭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통정책팀장 박 은 학
	담당자 성명·전화	권 효 중 (행정 2979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, 09:00부터 18:00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수요자 발생 시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7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, 야간 또는 공휴일등 이용이 적은 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)</p> <p>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</p> <p>2. <u>65세 이상으로</u>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1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)</p> <p>① -----</p> <p>1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</p> <p>2. <u>임산부 또는 65세 이상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및 대수)</p> <p>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<u>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</u> <u>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12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및 대수)</p> <p>① ----- <u>대중교통요금</u>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3조의2(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자)</p> <p>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해당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·운영과 이용요금은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,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
--------------------	--

##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대의견

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함.

- 금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바우처택시를 처음 도입 운영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용대상 및 요금, 이용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시행하여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,
-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모니콜 사용대상자와 바우처택시 사용대상자 등 사용대상자 별 사용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관련 혜택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.
- 또한, 하모니콜 차량이 보유 차량수에 비해 운전자수가 부족하여 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, 바우처택시 도입 이후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모니콜 차량 감차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람.